

총 무 처

우 110-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 (02) 720-4401 / 전송 720-2068

문서번호 감사 16800 - 55

시행일자 1996. 3. 14. (5년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 기획관리실장, 감사관

| | | | |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선 결 | | | 지 시 | |
| | 접 | 일자 시간 | | '96. |
| 수 | 번호 | | 결 재 · 공 람 | |
| | 처 리 과 | | | |
| 담 당 자 | | | | |
| | | | | |

제목 '96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 통보 (국무총리지시 제1996-6호)

-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을 적정수준에서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일선행정기관의 수감부담 경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- 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'96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'96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가 11~17, 20~32, 40~54, 나. 다.

[국무총리지시 제1996-6호]

< 1996년도 >

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

1996. 3. 14.

총무처

목 차

I. 근거 및 목적 1

II. 기본방향 1

III. 추진방침 2

[행정감사]

1. 적정한 행정감사 실시로 수감부담 경감 2
2.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강화로 실효성 확보 4
3.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실시 6
4. 합동감사 운영개선으로 제도의 활성화 도모 7
5. 「삶의 질」의 향상을 위한 국민위주의 민원처리 8

[지도방문]

1. 지도방문의 제한으로 피방문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 11
2. 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간의 협의 긴밀화 12
3. 지도방문 조정·통제의 활성화 12

IV.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특전 13

1.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감사의 효율성 증진 13
2.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전의 준수로 사기진작 도모 14

V. 행정사항 15

‘96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

I. 근거 및 목적

- 행정감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침을 정함

II. 기본방향

- 적정한 행정감사 실시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수감부담 경감
 -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지속적 이행
 - 감사계층제 실시로 중복감사 지양
-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강화로 행정감사의 실효성 확보
 - 당해 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
 - 주요업무 또는 비리·취약분야 집중감사
 - 일상감사 강화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사전 예방
-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실시
 - 각종 사고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점검
 - 기강감사 강화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
- 협동감사 운영개선으로 제도의 활성화 도모
 - 협동감사 운영지침을 정하여 감사의 효율화 제고
- 「삶의 질」 향상을 위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감사
 - 부정·비리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 구현
 - 민생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국민위주의 민원행정 지원
-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의 제한으로 일선기관의 부담 경감

III. 추진 방침

[행정감사]

1. 적정한 행정감사 실시로 수감부담 경감

가.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지속적인 이행

- 중앙행정기관 : 2년
- 재외공관 : 4년
- 서울특별시, 광역시, 도 및 시·도 교육청 : 2년
- 기타 행정기관 : 3년

나. 감사계획의 조정·통제 강화

◦ 감사계획 조정·통제 방향

-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으로 과다한 감사 지양
- 감사계층제 실시로 중복감사 방지
- 종합·부분감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정·통제기관에 의한 조정을 받은 후 실시

◦ 기강감사의 조정·통제

-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·그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포함)의 공무원에 대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시
 - 기관장에게 연도종합계획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세부시행은 보조기관에 위임실시 가능

◦ 감사계획 조정 · 통제기준

- 감사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
 -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이행 여부
 - 감사의 중복 여부
 - 감사내용,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와의 중복 등
 - 감사계층제 실시 여부
 -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합성
 - 특정기관 · 특정지역에의 편중, 감사목적에 적합한 기관 여부
- ※ 대상기관 및 지역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, 결정
- ※ 감사분야가 다르더라도 동일기관에 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
-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
 - 감사인원의 적정편성 여부
 - 합동감사 또는 표본감사로 감사목적 달성가능 여부

다. 감사생략제의 준수로 중복감사 지양

-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
감사 생략
- 당해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
사유가 없는 한 차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
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
-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안에서 사후감사(종합 · 부
분감사) 생략
-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감사관계관이 참여하여 심의 · 결정한 민원처리
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면제조치

- 부분감사 실시의 경우, 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실시를 지양하고 표본감사 실시
- 국가감사활동의 전산화(on-line)체제 구축과 활용
 - 감사원,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시·도의 감사 및 지도방문계획과 활동실적을 행정전산망을 이용, on-line화 추진중
 - 전산화 대상업무 :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및 모든 유형의 방문계획과 그 실적
※ 방문유형 : 지도, 확인·점검, 민원사안조사, 자료수집 등
 - 전산화 전담부서 : 지도방문 조정·통제부서 또는 지도방문 총괄부서
 - 전산화 방법 : 연초에 당해년도 감사 및 지도방문계획을 입력한 후 매월 말에 전월실적과 익월계획을 입력

라. 계층제 감사의 철저 이행

-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포함)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 제1차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실시
- 부득이 제2차이하 소속기관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차소속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중복감사 방지

2.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강화로 실효성 확보

가. 당해기관 감사강화로 자체감사기능 활성화

- 본부의 실·국에 대한 감사 적극 실시

나. 주요업무 또는 비리·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

◦ 집중감사 분야

- 국가의 주요시책사업
- 국민생활의 안정관련 주요사업
-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한 사항
- 주요 인·허가사업
- 비리·취약분야 등

◦ 계통감사 실시

- 공사·교통·환경관련업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심충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→실시→완료→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계통감사를 실시,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·검토하여 시정하고 개선
- 대형사고 등 긴급사태의 발생 또는 중대한 시행착오 등으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정부신뢰에 손상을 준 현안이 발생한 경우
 -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감사계획의 조정·통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즉각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·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, 사후에 조정·통제기관에 실시일시, 실시사유, 대상기관, 감사내용, 감사관수, 감사기간, 처분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(또는 통보)

다. 주요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의 적극적 실시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

- 감사부서가 설치된 각 행정기관은 기관실정에 적합한 일상감사지침을 제정,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

- 주요업무 또는 비리·취약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전 뿐만 아니라 시행 중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와 부조리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예방
- 기관별로 정하는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이상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방감사활동 적극 전개

3.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점검 실시

- 가. 비리·취약업무 등 각종 사고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처리절차
· 결과·점검체계 등을 전산화하는 등 상시점검체계 확립
- 과세, 인·허가, 권리설정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부정·비리 방지
 - 주요구조물, 대형공사, 다중이용시설, 위험발생우려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고 예방

나. 기강감사 강화로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

- 대민창구 근무실태, 각종 행정현장 등에 대한 노출 또는 비노출 감찰 강화
- 무사안일·직무기피행태의 추방
- 추석 등 명절에 편승하거나 행정처리의 댓가로 금품수수 또는 이권 개입행위 척결
- 부정·비위관련자는 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”(‘94.11.24 국무총리훈령 제305호)에 의거 고발 조치

4. 합동감사 운영개선으로 제도의 활성화 도모

가.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동으로 감사 실시

-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위임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시

나. 다수의 행정기관이 동일기관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합동감사 적극 활용

-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간 또는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
- 중앙행정기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 등

다. 합동감사 운영지침의 제정·시행 (현재 개정 추진중인 행정감사 규정 개정령안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)

- 근거 및 목적 : 행정감사규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합동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감사반원의 자격기준,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을 규정
- 합동감사반 편성·운영 : 합동감사반은 내무부장관 주관으로 편성하고 운영함
- 합동감사반원의 자격기준 : 감사반원은 행정감사규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당해 기관을 대표하여 실효성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야 함 (가급적 5급공무원으로 선발)

- 합동감사 실시방법 : 일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, 특히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수행하며, 수감기관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
- 합동감사 결과처리 : 합동감사결과 행정상·재정상·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은 합동감사참여기관 감사관계관으로 구성된 「합동감사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 - 합동감사운영지침 준용 : 중앙행정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감사반원의 자격기준, 감사실시방법, 감사결과처리 등은 준용함
- 합동감사협의회의 임무
 -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에 따른 감사방향, 감사수행과정의 현안문제 협의·결정
 -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감사를 위한 협의·결정
 -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, 형평성 확보를 위한 처리기준의 협의·결정
 - 기타 합동감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·결정
- 합동감사 생략 :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합동감사를 생략

5. 「삶의 질」의 향상을 위한 국민위주의 민원처리

가. 민원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적정처리 지원

- 처리완료된 민원은 물론, 처리과정중인 중요민원에 대해서도 위법·부당처리를 시정·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

- 공장설립허가 등 장기성 민원
 -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, 건축허가 등 이권성 민원
 - 재개발관련민원 등 집단민원
 -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·유지에 따른 고질성 민원 등에 대한 처리과정 또는 처리결과 감사 실시
- 부당한 취하·반려·불가처리 인·허가민원에 대한 집중감사로 위법
· 부당행위를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국민불만 해소
- 무사안일행태를 엄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분위기 조성
 - 법규를 빙자하여 처리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 처리행위
 - 불필요한 질의·협의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
 - 예산·감사 등을 이유로 당해기관(담당자)에서 처리가능한 민원을 상급관서(상급자)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처리하는 수동적 업무처리행위
 - 경미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보정·보완요구 없이 반려 또는 지연처리하는 행위
 - 민원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완·보정요구를 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행위
 - 정당한 민원임에도 주변여론, 반대민원 발생우려 등 사유를 내세워 민원처리를 미루거나 처리치 않고 방치하는 행위

나.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히 불문 또는 관용 조치

- 명백한 위법·부당처리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국민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조치 또는 불문처리 함으로써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신껏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

다.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편에 서서 민원처리

- 각종 민원중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나 처리기준 등이 애매모호한 사항 또는 다수부서가 관련되어 단독처리 할 수 없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 등(간부회의 활용도 포함)에서 심의·처리토록 하고,

감사관계관은 이의 심의과정에 참여하여 적법·타당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신중·공정하게 처리하고 사후 수감부담으로 인한 소극적 또는 처리기피행위 방지

◦ 대상업무

- 공장설립, 대단위시설 설립허가업무 등 1개 부서의 결정으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대립으로 일방의 이익이 타방의 손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
- 법령·지침·지시 등이 상충되어 명백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
- 민원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 -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처리부서, 처리기간, 구비서류, 수수료 등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원
 - 새로운 유형의 민원으로서 기존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적용할 수 없는 민원
- 민원조정위원회 등(간부회의 등 포함)에 감사관계관이 참여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심의·결정한 경우, 당해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면제조치

[지도방문]

1. 지도방문의 제한으로 피방문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

가.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의 지속적 억제로 일선기관의 수감부담 경감

-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실시의 지속적인 감축
- 전화·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 실시 금지
- 유사한 시기에 같은 부처의 다수부서에서 동일기관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실시할 경우 합동지도방문 실시
- 1개 기관에 대한 1회 지도방문은 원칙적으로 1일 이내에 실시
- 업무성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역, 기관, 시기에 편중실시 지양

나.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기준수를 '95년도 실시수준으로 유지

-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부처별 실시기준 : 별첨 1
- 중앙행정기관의 그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(지방자치단체 제외)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기준 : '95 실시기준('93 실시실적의 10% 감축 실시)에 준함
- 지도방문실시기준 초과시 총무처장관과 협의
 -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하거나
 -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예정일 15일전까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

2. 방문기관간과 피방문기관간의 협의 간밀화

-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등 방문기관은 피방문기관의 수감상황을 참작하여 방문계획을 조정, 인근기관을 방문하는 등 피방문기관의 수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
- 피방문기관에서는 지도방문기관의 방문계획이 과다·중복방문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계획 조정을 건의 할 수 있음

3. 지도방문 조정·통제의 활성화

- 지도방문 조정·통제체제의 확립
 - 중앙행정기관 :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
 - 시·도 및 교육청 : 중앙행정기관에 준함
 - 시·군·구 및 교육청 :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사전결재로 지도방문 실시
- 지도방문 조정·통제기준
 - 지도방문실시기준 범위내 여부
 - 전화·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 여부
 - 특정지역, 기관, 시기의 편중 여부
 - 지도방문 인원, 기간의 과다 여부
 - 동일·유사목적으로 다른 기관(다른 부서)에서 이미 지도방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
 - 합동지도방문 실시가능 여부
 - 기타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여부 등

- 지도방문 조정 ·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
 - 회의참석, 자료수집, 특정업무에 대한 교육실시, 고시시행 등 지도 · 점검 · 확인의 목적이 아닌 기관 방문
 - 민원사안 처리를 위한 해당기관 방문
 - 산불진화, 수해복구 등 급박한 사태의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
 - 공사 진척사항 확인 등 현장만을 방문하는 행정수행의 경우
- ※ 조정 ·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자율적으로 수행

IV.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특전

1.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감사의 효율성 증진

- 감사담당공무원의 선발요건 강화 (현재 개정 추진중인 행정감사규정 개정령안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)
 - 감사부서의 장
 - 중앙행정기관
 - 2급 내지 3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3급으로 보할 때에는 당해 계급에서 2년이상
 - 3급 내지 4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4급으로 보할 때에는 당해 계급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중에서 선발
 - 기타 행정기관
 - 복수직급으로 보직하도록 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, 근무경험과 감사관련지식이 풍부한 자를 우선 선발
 - 감사담당공무원 : 행정감사규정 제32조의2에 규정된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,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상 근무한 자중 당해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선발

◦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강화

-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 토록 하고, 기관특성에 맞는 자체교육 강화로 전문성 강화
 - 감사기법, 감사착안사항, 중점감사대상에 대한 업무분석 등
 - 선진외국의 감사제도 및 기법연찬을 위한 자체감사요원 정책연수 추진
 - 매년 20명내외, 2주간 실시계획
- ※ 「자체감사기능 강화대책」의 일환으로 행정조정실과 협조·추진

◦ 감사담당공무원 임용시 협의 강화

-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
 -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 선발
 -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('95.12.30 총무처 예규 제289호)
 -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(2년)을 준수하여 빈번한 전보로 인한 감사의욕 및 기능저하 방지
- ※ 공무원임용령 제45조

2.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전의 준수로 사기진작 도모

◦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경력 가산점 부여

-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는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초과 매 1월마다 0.04점씩 최고 2점까지 경력가산점 부여
- ※ 공무원평정규칙 제1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3항

- 감사담당공무원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

-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,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에 반영

※ 행정감사규정제32조의3, 인사관계법령에따른인사관리지침('95.12.30 총무처 예규 제289호)

V. 행정사항

1.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기록관리

- 감사카드 및 지도방문기록부의 작성 · 비치

- 행정감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에는 “감사카드”를, 동규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는 “지도방문기록부”를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
 - “감사카드” 서식 : 별첨 2
 - “지도방문실시기록부” 서식 : 별첨 3
 - “지도방문수감기록부” 서식 : 별첨 4
- 행정감사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 기관의 책임직공무원은 피감사기관(피방문기관)에 비치되어 있는 “감사카드” 또는 “지도방문수감기록부”에 소정사항을 직접 기재하여 감사사항 또는 지도방문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- 지도방문 조정 · 통제부서에서는 지도방문을 승인(지도방문조정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· 군 · 구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결재)한 후 “지도방문실시기록부”에 우선 소정사항을 기재하고, 사후에 출장복명서 · 지도방문실시결과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조치사항을 기록 · 유지함으로써 유사 · 중복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2. 시정·개선 요구사항

- 중앙행정기관, 시·도 및 교육청은 “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”을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정부의 시책이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될 수 있도록 조치
- 총무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분석·평가결과와 정부의 정책방향, 각급 행정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로 하여 행정감사제도 개선에 반영
-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·도 및 교육청은 감사실시기관이 시정·개선 요구한 사항과 자체감사결과 시정·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·개선조치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개선하도록 조치
- 감사 및 지도방문결과보고서의 통보기일 준수 (행정감사규정 제30조 및 제31조)
- 행정감사계획의 제출기일 준수 (행정감사규정 제12조)

3. 표본지방자치단체의 지정

-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제도의 보완·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대상 표본지방자치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
- 표본 지방자치단체 (32개)

| 도(4) | 시(4) | 군(8) | 읍(8) | 면(8) | 비 고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경기도 | 수원시 | 화성군 김포군 | 태안읍 김포읍 | 향남면 통진면 | ◦ ‘96.3.1자로 “이천군”이 “이천시”로 승격됨에 따라 표본지방자치단체 중 “이천군(이천읍·대월면 포함)”을 “김포군(김포읍·통진면포함)”으로 변경 지정함 |
| 충청남도 | 천안시 | 연기군 홍성군 | 조치원읍 홍성읍 | 전의면 갈산면 | |
| 전라남도 | 순천시 | 담양군 영암군 | 담양읍 영암읍 | 창평면 군서면 | |
| 경상북도 | 경주시 | 의성군 울진군 | 의성읍 울진읍 | 비안면 기성면 | |

< 별첨 1 >

'96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부처별 실시기준표

| 부처명 | 연간실시기준 (기관수) | 부처명 | 연간실시기준 (기관수)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재정경제원 | 108 | 병무청 | - | ※내무부장관이 |
| 조달청 | - | 문화체육부 | 110 | 지방자치단체 |
| 국세청 | - | 농림수산부 | 1,192 | 에 대하여, |
| 관세청 | - | 농촌진흥청 | 248 | 교육부장관이 |
| 통계청 | 289 | 산림청 | 174 | 교육청에 |
| 통일원 | - | 수산청 | 54 | 대하여 실시 |
| 총무처 | 93 | 통상산업부 | 38 | 하는 지도 |
| 과학기술처 | - | 중소기업청 | 9 | 방문은 '95년 |
| 기상청 | - | 특허청 | - | 실시기준에 |
| 公报처 | 35 | 정보통신부 | - | 준하여 자율 |
| 법제처 | 103 | 환경부 | 65 | 적으로 실시 |
| 국가보훈처 | - | 보건복지부 | 666 | |
| 의무부 | 13 | 노동부 | 8 | |
| 경찰청 | - | 건설교통부 | 524 | |
| 법무부 | - | 철도청 | - | |
| 대검찰청 | - | 해운항만청 | - | |
| 국방부 | 19 | | | |
| | | 계 | 3,748 | |

감사카드

| ①감사근거 | ②감사종류 | ③감사기관 | ④실시기간 | ⑤감사관수 | ⑥감사사항 (주요내용) | ⑦감사관 직·성명·서명 | ⑧수감책임관 직·성명·서명 | ⑨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15015-02211번 1995.12.22 제정 | | | | | 364mm×257mm 인쇄용지 특급 70g/m ² | | | |

* 관리요령

- 감사카드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
- ①~⑦란 까지는 감사를 실시한 책임관이 기재하고, ⑧란은 수감부서의 감사책임관이 확인하고 서명
- 이 카드는 감사실시일자 순으로 기록
- 이 카드는 부채으로 하되, 좌측으로 철학

지도방문 실시기록부

| ① 연번 | ② 실시부서 | ③ 목적 | ④지도방문(지도· 확인·점검)내용 | ⑤ 대상기관 | ⑥책임관 직· 성명 및 인원 | ⑦ 실시기간 | ⑧근거(조정·통제부서의 승인 또는 기관장의 승인 문서번호) | ⑨ 조치사항(요약) | ⑩지도방문 조정·통제부 서의 장 확인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| | | | | |

15015-02411비
1995.12.22 제정

364mm×257mm
인쇄용지 특급 70g/m²

* 관리요령

- 위 기록부는 지도방문 조정·통제부서에서 접수관리
- 위 기록부는 조정·통제일자 또는 기관장(위임된 경우는 부기관장등)의 결재일자 순으로 기록
- 이 기록부는 부록으로 하되, 차례으로 첨함

지도방문 수감기록부

364mm x 257mm
인쇄용지 특급 70g/m²

* 관리요령

- 위 기록부는 지도방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집중 관리
 - ①~④란은 지도방문을 실시한 책임관이 기재하고, ⑤란은 피방문부서의 책임관이 확인하고 서명
 - 위 기록부는 실시일자 순으로 기록
 - 이 기록부는 부채으로 하되, 좌측으로 철함